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65 발의 연월일: 2019. 9. 6. 발 의 의 원: 이진련 의원

강민구 의원

경인丁 의전

김동식 의원

김성태 의원 김태워 의원

김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을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 1. "피해자" 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약칭:원폭피해자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 하였으나 부·모·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다.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와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원폭피해자 추모 사업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4조제3호 및 제5호)
- 라.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원폭피 해자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다. 예산조치 : 부서협의 필요함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자폭탄 피해자"를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피해자" 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약칭: 원폭피해자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모·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 중 "원폭피해자"를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 하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4조제2호 "원폭피해 방지 교육 및 홍보"를 "원폭피해 교육 및 홍보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 4.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 5. 원폭피해자 추모 사업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 폭탄 피해자" (이하 "원폭피 해자"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에 주소를 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약 칭:원폭피해자법)제2조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는 손자녀-----위하여 원폭피해자지원계획(이 하 "지워계획" 이라 한다)을 수 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폭탄 제1조(목적)----1945년 일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란 「한국인 원자 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약칭:원폭피해자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 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 되지 아니하였으나 부·모·조 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 하여야 하다.

제4조(지원사업)

- 1.(생 략)
- 2. 원폭피해 방지 교육 및 홍보 <신 설>

3.(생 략)

<신 설>

제9조(생 략)

- 1.(현행과 같음)
- 2. 원폭피해 교육 및 홍보
- 3.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자 료정리
- <u>4.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u> 원
- 5. 원폭피해자 추모 사업
- 6.(종전의 제3호와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 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과 상 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청할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와 같음)

관계 법 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9

- 제1조(목적)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 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다.
 -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 **제7조(피해자 실태조사)** ① 위원회는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 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 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1. 수술비
 - 2. 진찰·검사비
 - 3. 입원비
 - 4. 약제비
 - 5. 진료보조비
 -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 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